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0. 7. 14.>

제　　호

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(변경지정)서

1. 시설의 명칭:

2. 소 재 지:

3. 대표자의 성명(법인의 명칭):

4.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:

5. 지정일:

(변경지정일:　　, 변경 사유:　　)

6. 훈련방법: [ ] 집체훈련([ ] 실업자 등 [ ] 재직자 위탁
[ ]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의 소속 근로자 전용)
[ ] 우편원격훈련
[ ] 인터넷원격훈련([ ] 자체 [ ] 위탁)

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(변경지정)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장(지청장・출장소장) 직인

※ 비고
1.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2. 이 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150g/㎡)